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1. 19. 선고 2019고정 513,2019고정51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재물손괴

수 원 지 방 법 원 성 남 지 원

판 결

사건 2019고정513, 2019고정51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통신매

체이용음란),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성욱, 임용희(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이경민

판결선고 2019.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정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1. 28. 14:10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슴에 너무 눈이가네요', '미드(가슴을 지칭)'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 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2019고정51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1. 09:53경 성남시 수정구 D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E(37\ M)$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수리비 1,2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019고정513]

-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1. 수사보고(B 내용)

「2019고정51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E 작성 진술서
- 1. 견적서
- 1. 피해사진 자료,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판사 범선윤